

정 관



사단
법인 **한국마린엔지니어링학회**

(사) 한국마린엔지니어링학회 정관

정관 제정	1976. 8. 1
정관 개정	1978. 9. 1
정관 개정	1980. 10. 11
정관 개정	1984. 10. 20
정관 개정	1985. 10. 20
정관 개정	1987. 10. 20
정관 개정	1988. 10. 20
정관 개정	1991. 10. 28
정관 개정	1996. 10. 21
사단법인 정관 개정	2005. 4. 21 (해양수산부장관 허가)
사단법인 정관 개정	2005. 12. 9 (해양수산부장관 허가)
사단법인 정관 개정	2006. 12. 15 (해양수산부장관 허가)
사단법인 정관 개정	2014. 3. 5 (해양수산부장관 허가)
사단법인 정관 개정	2018. 3. 6 (해양수산부장관 허가)
사단법인 정관 개정	2019. 8. 28 (해양수산부장관 허가)
사단법인 정관 개정	2021. 1. 18 (해양수산부장관 허가)
사단법인 정관 개정	2022. 3. 31 (해양수산부장관 허가)

제 1 장 총칙

제 1 조(명칭) 본 학회는 사단법인 한국마린엔지니어링학회(이하 “본회”라 한다)라 부른다. <개정 2005.4.21.>

제 2 조(소재지) 본회의 사무소는 부산광역시 영도구 태종로 727 (동삼동, 한국해양대학교 해사대학관)에 둔다. <개정 2018.3.6.>

제 3 조(목적) 본회는 조선해양기자재 및 관련 산업의 학문과 기술의 향상·보급에 공헌하고, 산·학·연·관·언과의 정보교류 및 싱크탱크 역할수행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05.4.21.> <개정 2021.1.18.>

제 4 조(사업) 본회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.

1. 학문과 기술적 문제에 관한 간행물의 발행
2. 학술강연회 및 토론회의 개최
3. 회지(학회지 및 소식지)와 기술에 관한 간행물의 발행 <전면 개정 2018.3.6.>
4. 조선해양기자재 및 그와 관련 산업에 관한 자문
5. 연구의 장려 및 우수한 업적의 표창
6. 그 밖에 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

제2장 회원

제 5 조(회원구분) ①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, 학생회원, 단체회원으로 나눈다. <개정 2005.4.21.> <개정 2019.8.28>

② 정회원 중 종신회비를 납부한 자를 종신회원으로 한다.

제 6 조(정회원) 정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. <개정 2005.4.21>

1. 조선해양기자재 산업과 관련이 있는 산·학·연·관·언에 종사하거나 관심이 있는 자.
2. 해양, 수산 및 이공계 대학을 졸업한 자.

제 7 조(준회원) <삭제 2005.4.21>

제 8 조(학생회원) 학생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. <개정 2005.4.21>

1. 조선해양기자재 및 그의 관련 산업에 관심이 있는 대학이상의 재학생.
2. 해양, 수산 및 이공계 학교의 재학생.

제 9 조(단체회원) 단체회원은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고, 이에 협조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공공단체로 한다.

제10조(입회) 본회의 회원(고문)으로 입회를 원하는 자는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<개정 2014.3.5>

제11조(회원의 의무) ① 본회의 회원(고문 제외)은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.

② 상당기간 회비를 체납한 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원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.

제12조(회원의 권리)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모든 행사에 참여하여 회원으로서의 권리를 갖는다.

제13조(고문 및 전문위원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고문 및 전문위원으로 추대할 수 있다. <개정 2005.4.21.> <개정 2019.8.28>

1. 조선해양기자재 및 그의 관련 산업의 학문과 기술의 향상, 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.
 2. 본회의 목적 달성에 많은 공헌이 있는 자.
- ② 고문은 당연직 평의원이 된다.

제14조(제명) ① 회원으로서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본회의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를 행한 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제명할 수 있다.

② 전항에 의하여 제명된 자는 납부한 회비는 납부회비 잔여기간에 비례해서 반환한다. <개정 2019.8.28>

제3장 임원

제15조(임원의 종류 및 정수) 이 법인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.

1. 회장 1인
2. 부회장 5인 이상 30인 이내 <개정 2014.3.5.> <개정 2018.3.6.>
3. 이사 10인 이상 99인 이내 <개정 2014.3.5.> <개정 2018.3.6.> <개정 2019.8.28.>
<개정 2022.3.31.>
4. 감사 2인

제16조(임원의 임면) ① 회장 및 감사는 정회원 중에서 평의원회가 호선한다.

② 부회장 및 이사는 정회원 중에서 회장이 임명한다. <개정 2006.11.9>

③ 임기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감사는 평의원에서 호선하고, 부회장 및 이사는 회원 중에서 회장이 임명한다.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 <개정 2006.11.9>

④ 회장은 이사 중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이사회 결의에 의해 해임할 수 있다.

1. 본회의 명예를 심히 실추시킨 자
2. 본회의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를 한 자

제17조(임원의 임기) 이사(회장 및 부회장 포함)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. 결원으로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제18조(회장 및 부회장) ① 회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본회를 대표하며, 총회와 평의원회 및 이사회 의장이 된다.

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, 회장 유고시는 본회의 세칙에 의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. <개정 2018.3.6.>

제19조(이사) 이사의 업무분담은 따로 정한다.

제20조(감사)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.

1. 법인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
2.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
3.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불법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, 그래도 시정치 않을 때에는 감독청에 보고하는 일
4. 제3호의 시정 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 소집을 요구하는 일
5. 법인의 재산 상황 또는 총회, 이사회 운영과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회장 또는 총회,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일

제4장 회의

제21조(회의의 종류) 회의는 총회, 평의원회 및 이사회로 한다.

제22조(총회의 구성) ① 총회는 정회원과 단체회원의 대표로 구성하고 회원 20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 회원 과반수로써 의결한다. 다만, 출석이 불가능한 자는 다른 정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고,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. <개정 2019.8.28>

② 본회의 모든 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. 다만, 총회에서의 의결권과 임원의 선거 및 피선거권은 정회원과 단체회원의 대표만이 갖는다.

제23조(정기총회)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계연도 종료 전에 개최한다. <개정 2005.12.9>

제24조(임시총회) 회장은 평의원회의 의결, 감사, 이사회의 의결 또는 정회원 20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<개정 2019.8.28>

제25조(총회의 기능) 다음 사항은 총회에서 이를 심의 결정하되 출석회원 과반수로 의결하고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. <개정 2019.8.28>

1. 정관 변경
2. 회장 및 감사의 인준 <개정 2006.11.9>
3. 예산 및 결산의 승인 <개정 2005.12.9>
4. 사업계획 및 수지결산
5. 그밖에 특별한 규정 또는 평의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제의된 사항

제26조(평의원회) ①본회의 운영에 대한 회원의 의사를 적절히 반영하기 위하여 평의원회를 둔다. <개정 2005.12.9>

② 평의원의 선임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.

③ 평의원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, 또는 평의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.

④ 평의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.

1. 회장 및 감사의 선출
2. 정관 변경안의 심의
3. <삭제 2019.8.28>
4. <삭제 2019.8.28>
5. <삭제 2019.8.28>
6. 그 밖에 특별한 사항 또는 주요 업무<개정 2019.8.28>

⑤ 평의원회는 평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, 출석 평의원 과반수로써 의결하되,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. <개정 2019.8.28>

제27조(이사회) ①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.

1.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
 2. 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
 3. 예산·결산에 관한 사항
 4. 세칙 또는 제 규정의 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<개정 2005.12.9>
 5. 그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- ②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- ③ 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
1.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하였을 때
 2. 제20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하였을 때
- ④ 이사회는 이사 정수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, 출석 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.
- ⑤ 고문, 전문위원, 각종 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 및 감사는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. <개정 2019.8.28>

제28조(서면결의) ① 회장은 평의원회에 부의할 사항의 내용이 경미하며 시급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결의를 할 수 있다. <개정 2019.8.28>

②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 결의에 의할 수 없다.

제5장 재정 및 회계

제29조(경비와 유지방법) 본회의 경비는 회원이 납부한 회비와 그 밖의 수입으로써 충당한다. <개정 2014.3.5.> <개정 2019.8.28>

제30조(예산외의 채무부담) 수지예산으로 정한 이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항은 평의원회 및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.

제31조(회계연도)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. <개정 2005.12.9>

제6장 보칙

제32조(해산) 본회를 해산하고자 할 경우에는 총회에서 재적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,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「민법」 제85조에 따라 해산등기를 하고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. <개정 2019.8.28>

제33조(잔여재산의 처분) 본회를 해산할 경우에는 잔여재산은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유사 학술단체에 기증한다.

제34조(정관개정) 본회의 정관을 개정하고자할 때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양수산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
제35조(세칙)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세칙은 이사회에서 정하여 평의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제36조(광고사항 및 방법)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회원들이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매체를 이용하여 공고하고 시행한다. <개정 2005.4.21>

1. 학회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
2. 학회의 해산 및 재산 귀속
3. 이사회에서 공고하기로 의결한 사항

제37조 (승계) 사단법인 한국마린엔지니어링학회는 1976년 8월 1일 창립된 한국박용기관 학회를 승계한다. <개정 2005.4.21>

제38조 (시행) 본 정관은 해양수산부 장관의 허가를 받고 관할 법원에 등기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39조 (의사록 공증) 본 법인의 각종 의사록 공증은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. <개정 2019.8.28>